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6(火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애항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계룡시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시비 출연 및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우수인재의 발굴·육성을 장학재단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함(안 제2조)
- 장학재단의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- 장학재단의 기금조성 방법을 정함(안 제5조)
-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운영경비는 기금의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하도록 함(안 제7조)
-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9조)
-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2항 및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룡시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시비 출연 및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